

2018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

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

-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 불가능(전액 환수 조치)
- 인건비 (중복 지급 불가)
 - 기획자, 주·보조강사 인건비의 합은 **전체 사업예산의 60% 이내로 책정**
 - 기획자 인건비 : 회차당 기본 50,000원 (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,000원 지급)
 - 강사비 : 강사 - 시간당 43,000원, 보조강사 - 시간당 22,000원
- 운영비 내 여비와 회의식비의 합은 **전체 사업예산의 5% 이내로 책정**
- 식음료
 - 모든 식음료비는 '운영비' 내 책정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
 -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는 매회 책정 가능하나,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식비는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, 캠프 등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책정 가능
 - 회의식비는 매 회차 강사들의 식대 성으로 지출될 수 없음.
(사업 관련 회의 시에만 지출 가능하며 회의록 제출 필수)
- 자산 취득성 물품 구매 불가(임차로 진행)
- 기념품 제작(USB 등) 및 도서 구매 불가
- 교육 공간 및 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예산 필수 책정. 단 공간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, 추가 보험가입 여부는 단체·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
- 현금지출 및 간이영수증 불가
-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

| 목 | 세목 | 내 용 |
|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인건비 | 기획자 인건비 | ○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,000원,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,000원 지급 - 기획자 인건비는, 효율적인 사업관리(회계, 기록 등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-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(중복 지급 불가) ※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|
| | 강사비 | ○ 주강사 : 시간당 43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|
| | 초빙 강사료 (연수 등) | 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|

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 <td>1등급*</td> <td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</p> 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강사료 | 1등급* | 250,000/시간 | 2등급* | 150,000/시간 | 3등급* | 100,000/시간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|
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강사료 | 1등급* | 250,000/시간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등급* | 150,000/시간 | | | | | | | | | | | |
| | 3등급* | 100,000/시간 | | | | | | | | | | | |
| 행사 진행자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행사료</td> <td>1등급*</td> <td>20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</p> 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행사료 | 1등급* | 200,000/시간 | 2등급* | 150,000/시간 | 3등급* | 100,000/시간 | | |
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행사료 | 1등급* | 200,000/시간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등급* | 150,000/시간 | | | | | | | | | | | |
| | 3등급* | 100,000/시간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문가 활용비 (학술 행사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학술 행사비</td> <td>1등급*</td> <td>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 <td rowspan="3">· 3시간 이내일 경우(*) 금액 적용 · 국외: 실소요액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</p> 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비 고 | 학술 행사비 | 1등급* | 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 | · 3시간 이내일 경우(*) 금액 적용 · 국외: 실소요액 | 2등급* | 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 | 3등급* | 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 |
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
| 학술 행사비 | 1등급* | 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 | · 3시간 이내일 경우(*) 금액 적용 · 국외: 실소요액 | | | | | | | | | | |
| | 2등급* | 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 | | | | | | | | | | | |
| | 3등급* | 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 | | | | | | | | | | | |
| 심사 및 자문료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심사료 및 자문료</td> <td>1등급</td> <td rowspan="2">200,000원</td> <td rowspan="3">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: 150% · 5시간 이상: 200% · 국외: 실소요액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/tr> <tr> <td>3등급</td> <td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자문료 지급 관련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</p> 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비 고 | 심사료 및 자문료 | 1등급 | 200,000원 | 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: 150% · 5시간 이상: 200% · 국외: 실소요액 | 2등급 | 3등급 | 100,000원 | |
| 구 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
| 심사료 및 자문료 | 1등급 | 200,000원 | 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: 150% · 5시간 이상: 200% · 국외: 실소요액 | | | | | | | | | | |
| | 2등급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3등급 | 10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고료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원고료(외부인사)</td> <td>○ 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</p> | 구 분 | 지급금액 | 원고료(외부인사) | ○ 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 | | | | | | | | |
| 구 분 | 지급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고료(외부인사) | ○ 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번역료 및 감수료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번역료</td> <td>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</td> </tr> <tr> <td>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</td> </tr> <tr> <td>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</td> </tr> <tr> <td>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</td> </tr> <tr> <td>감수료</td> <td>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 반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지급금액 | 번역료 | 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 | 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 | 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 | 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| 감수료 | 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 반영 | | | |
| 구 분 | 지급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번역료 | 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감수료 | 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 반영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 | | |
|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| 구분 | 등급 | 지급금액 | 비고 | |
| | 편곡 | 1등급 | 500,000원/곡 | 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| |
| | | 2등급 | 400,000원/곡 | 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 | |
| | | 3등급 | 300,000원/곡 | 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인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 | |
| 작곡 | 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| | | | |
| 감수료 | 등급무관 | 50,000원 | ·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 | | |
| <p>※ 1등급 : 국·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</p> <p>2등급 : 국내 시·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</p> <p>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</p> | | | | | |
| 보조 인력 | <p>○ 단기용역비(일용직)</p> <p>- 최대 1일 8시간, 61,000원(1인)</p> <p>※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,530원 적용</p> <p>※ 외부숙박인 경우 90,000원</p> <p>※ 연간 30일 이내 활용</p> | | | | |
| 제작비 | 안내 홍보물 제작비 | <p>○ 팜플렛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</p> <p>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</p> <p>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</p> | | | |
| | 인쇄비 | <p>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</p> <p>○ 조달청 기준 참고</p> | | | |
| | 외주 업체 용역비 | <p>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</p> <p>☞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</p> | | | |
| 진행비 | 여비 | ○ 출장경비 지급 기준 | | | |
| | | 구분 | 내역 | 지급방법 | 지급액 |
| | | 시내출장 | 여비 | 정액 | · 4시간 미만 : 1만원 · 4시간 이상 : 2만원 |
| | | 시외출장 | 교통비 | 실비 | · 대중교통비 지급 ·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* [유류비 산출기준] 참조 |
| | | | 숙박비 | 실비 (1박당) | · 서울특별시: 70,000원 · 광역시 60,000원 · 그 밖의 지역: 50,000원 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'그 밖의 지역'에 해당 |
| 식비 | 정액 | | · 2만원 * 2식 이하 제공 시 1/2 삭감 * 3식 제공 시 미지급 | | |
| 일비 | 정액 | | · 2만원 * 관용차, 렌터카 이용 시 1/2 삭감 | | |
| <p>○ 교통비 : 실비정액 기준</p> <p>- 개인차량 이용시 <u>차량유류비 지원 기준</u>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, 영수증 증빙 필수</p>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 <p>[유류비 산출기준]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</p> <p>○ 여행거리(km)</p> <p>-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</p> </td> </tr> </table> | | | | | <p>[유류비 산출기준]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</p> <p>○ 여행거리(km)</p> <p>-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</p> |
| <p>[유류비 산출기준]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</p> <p>○ 여행거리(km)</p> <p>-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</p> | | | |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<p>※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m)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</p> <p>○ 유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장신청서 결제 상신일 기준 유가 <p>※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제 상신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,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)를 적용</p> <p>○ 연비(km/ℓ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휘발유 차량 : 11.57(km/ℓ) - 경유 차량 : 12.12(km/ℓ) - LPG 차량 : 8.52(km/ℓ) <p>* 「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」(인사혁신처 예규) 적용 * 평균차령('07년)을 고려한 '07년 연비(에너지관리공단 통계) 적용</p> |
| <p>소모품 구입비</p> | <p>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</p> <p>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</p> |
| <p>공공요금</p> | <p>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발송, 퀵서비스, 보험료 등</p> <p>○ 우편통신요금 등</p> |
| <p>회의 식비</p> | <p>○ 다과비 기준단가 : 5,000원 / 1인 1회 기준</p> <p>○ 회의식비 기준단가 : 25,000원 / 1인 1식 기준</p> <p>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. 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</p> <p>○ 산출예시 (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 과 비 : 5,000원×100명×2식=1,000,000원 - 회의식비 : 25,000원×100명×2식=2,500,000원 |
| <p>임차비</p> | <p>○ 차량 임차 : 실비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- 특히, 프로그램 운영 기관·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<p>○ 장소 임차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</p> <p>※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,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(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)</p> <p>-문화기반시설 : 문화기반시설 총량의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, 지방문화원,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</p> <p>○ 기자재 임차 :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</p> |